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국토 현황과 국토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, 이를 국토계획 수립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의 추진과 관련된 국토기본법이 개정(법률 제17228호, 2020. 4. 7. 공포, 2020. 10. 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의 구축 및 유지·관리(안 제10조)

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조사의 범위에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,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를 유지·관리하도록 함

나.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(안 제10조의3)

국토기본법의 틀 안에서 국토조사, 국토계획평가 등과 국토모니터링이 연계되도록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, 국토모니터링의 대상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다. 업무의 위탁(안 제20조)

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높은 국토교육 운영, 정주지 온실
가스 조사,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점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
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등을 토대로 국토의 현황과 여건 변화를 분석 및 전망하고 국토계획과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진단 및 평가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국토의 시계열적·부문별 현황 분석 및 여건 변화 전망
2. 국토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
3. 국토종합계획과 별표의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국토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
4. 그 밖에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의 결과를 법 제1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및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9조제2호 중 “국토조사,”를 “국토조사(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10조의2제3호 및 제4호”를 “제10조의2제3호”로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국토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
2.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 조사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업무
3.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위한 국토의 현황 분석과 여건 변화 전망, 국토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의 진단 및 평가 업무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·주소·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국토조사의 실시) ①법 제 25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국토조사의 실시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10조의3(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법 제 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등을 토대로 국토의 현황과 여건 변화를 분석 및 전망하고 국토계획과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진단 및 평가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</u> 1. <u>국토의 시계열적·부문별 현</u>

	<u>황 분석 및 여건 변화 전망</u> <u>2. 국토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</u> <u>3. 국토종합계획과 별표의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국토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</u> <u>4. 그 밖에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 <u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의 결과를 법 제1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및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.</u>
제19조(권한의 위임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.	제19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삭제	
2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, 자료 제출의 요청, 직접조사의 요청,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	2. ----- 국토조사(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 ----- ----- --
3. 제1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	3. 제10조의2제3호-----

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
통계지도의 구축, 유지·관리
및 활용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33

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
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
국토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

2.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
의2제1호에 따른 정주지 온실
가스 통계 조사 및 유지·관
리에 관한 업무

3.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
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위한
국토의 현황 분석과 여건 변
화 전망, 국토계획에 대한 추
진상황의 진단 및 평가 업무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
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
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
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
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
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

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
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
연구기관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
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
위탁받을 기관의 명칭·주소·
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
및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
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733